

의안번호	2201951
의 퇴 인	정성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계번호	24F21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및
사업화시설 범위 확대, 추가공제율 인상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고, 사업화시설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며, 증가분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1조 8,480억원, 2031년 2조 2,919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12조 4,229억원(연평균 2조 70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, 시 설범위 확대 및 증가분 공제 율 인상 (안 제24조제1항)	-18,480	-19,405	-20,258	-21,150	-22,017	-22,919	-124,229	-20,705
- 적용기한 연장	-6,846	-7,188	-7,504	-7,835	-8,156	-8,490	-46,019	-7,670
-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	-10,782	-11,321	-11,819	-12,339	-12,845	-13,372	-72,478	-12,080
- 증가분 공제율 인상	-853	-895	-935	-976	-1,016	-1,058	-5,733	-955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6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 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 추가 - 시설범위: (현행) 기계장비 등 → (개정안) 토지 및 건축물 포함 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 인상 - 공제율: (현행) 4% → (개정안) 10%	
2	안 제10조의3 (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 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공제율: (당기분) 10~25%, (증가분) 10%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2	안 제10조의3 (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)	×	○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합리적 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 - 2025~203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31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3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 -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22~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을 바탕으로 연평균 전산업의 자산별 비중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
 - 2022~2024년간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(%): (토지 및 건축물) 55.7, (기계장비 등) 44.3
 - 향후 동 자산별 투자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 인상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액의 2023년 실적 대비 2024년의 증가분을 산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을 비율로써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향후 증가분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 취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의 범위 및 취득규모, 전체 연구개발 장비 대비 비중 등을 추정하여야

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－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－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
[표 2] 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3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□ (공제실적)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2조 799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 수준

-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대부분 법인세(1조 9,763억원)에서 발생하며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국가전략기술	8	10	8,233	8,251
계	4,455	1,496	13,812	19,76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12.2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국가전략기술>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중소기업	11	11	12	12	13	13
중견기업	13	13	14	14	15	16
대기업	10,680	11,214	11,708	12,223	12,724	13,246
계	10,703	11,239	11,733	12,249	12,752	13,274
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t-1)	5.8	5.0	4.4	4.4	4.1	4.1

주: 설비투자 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-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(%):
 - 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3, 중견기업 6, 중소기업 12
 - 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15, 중견기업 15, 중소기업 25
 - 세수효과 추정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(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5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2,146	2,253	2,353	2,456	2,557	2,662
	개정안(B)	10,703	11,239	11,733	12,249	12,752	13,274
	차이 (C=A-B)	-8,557	-8,985	-9,381	-9,793	-10,195	-10,613
세수효과 ($C \times [1 - 0.2]^{1)}$)		-6,846	-7,188	-7,504	-7,835	-8,156	-8,490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- (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)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바탕으로 2022~2024년간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-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22~2024년간 전산업 기준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은 기계장비 등 44.3%, 건축물 44.1%, 토지 11.6% 순

[표 6] 자산별 투자 실적 및 계획: 전산업 기준, 2022~2024년

(단위: 조원, %)

	2022	2023	2024	'22~'24년 연평균 비중
기계장비, 운수장비 등	102.2 (45.7)	96.7 (44.4)	96.1 (42.7)	44.3
토지	25.6 (11.5)	26.0 (12.0)	25.9 (11.5)	11.6
건축물	95.8 (42.8)	95.1 (43.6)	103.3 (45.8)	44.1
계	223.6	217.8	225.3	-

주: ()안은 전체 투자 대비 비중

자료: 산업은행, 「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」, 2024.1.

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계장비 등 투자가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설비투자 중 기계장비 등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토지 및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2026년(정수기준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세액 전망치에 자산별 투자 비중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
[표 7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10,703	11,239	11,733	12,249	12,752	13,274
	개정안 ($B=A \times 100/44.3$)	24,181	25,390	26,507	27,673	28,808	29,989
	차이 ($C=A-B$)	-13,477	-14,151	-14,774	-15,424	-16,056	-16,715
세수효과 ($C \times [1-0.2]^{1)}$)		-10,782	-11,321	-11,819	-12,339	-12,845	-13,372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□ (증가분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)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전략기술 업종별 투자액 증가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상 국가전략기술 업종의 2023년 투자실적 대비 2024년 투자계획의 증가분을 집계하면 2.4조원 수준
 - 단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 등 설비투자계획조사상으로 업종별 구분이 어려운 분야는 추계에서 제외

[표 8] 국가전략기술 업종별 투자 실적 및 계획: 2023~2024년

(단위: 조원, %)

	반도체	배터리	바이오	디스플레이	계
2023(실적,A)	18.4	1.4	0.2	3.6	20.4
2024(계획,B)	20.8	1.4	0.2	3.7	22.7
B-A	2.4	△0.0	△0.0	0.1	2.4

주: 1. 업종별 투자실적은 R&D 및 신제품 생산 목적의 투자금액만을 집계

2. 반도체와 바이오는 업종 전체를,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 투자액에 개별 업종의 R&D 투자비율을 통해 추정

자료: 산업은행, 「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」, 2024.1.

- 투자 증가분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와 전체 신고법인 대비 세부담이 존재하는 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세수효과를 집계
 - 세부담이 존재하는 기업에 한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, 전체 신고법인 대비 세부담 존재기업의 비중을 적용
 - ※ 세부담 존재기업 비중('23년 신고기준, %): 대기업 53.9, 중견기업 69.6, 중소기업 47.6
 -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,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[표 9] 국가전략기술 증가분 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중소기업	1	1	1	1	1	1	1	1	1
중견기업	1	1	1	1	1	1	1	2	2
대기업	949	972	1,005	1,064	1,117	1,166	1,217	1,267	1,319
법인세계(A)	951	972	1,008	1,066	1,119	1,169	1,220	1,270	1,322
세수효과 ($A \times [1 - 0.2]^b$)	761	777	806	853	895	935	976	1,016	1,058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고, 사업화시설 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며, 증가분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1조 8,480억원, 2031년 2조 2,919억원 등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12조 4,229억원(연평균 2조 70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, 시 설범위 확대 및 증가분 공제 율 인상 (안 제24조제1항)	-18,480	-19,405	-20,258	-21,150	-22,017	-22,919	-124,229	-20,705
- 적용기한 연장	-6,846	-7,188	-7,504	-7,835	-8,156	-8,490	-46,019	-7,670
-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	-10,782	-11,321	-11,819	-12,339	-12,845	-13,372	-72,478	-12,080
- 증가분 공제율 인상	-853	-895	-935	-976	-1,016	-1,058	-5,733	-955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